

---

# **종합감사결과**

**[ 2017년도 포면 ]**

---



# 도포면 종합감사 결과

## I. 감사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
- 수입, 지출,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
- 복지대상 관리 및 자원배분 실태 점검으로 중복·누락·편중 지원을 방지하여 역차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군민행복 실현

###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도 포 면
- 감사기간 : 2017. 4. 25 ~ 2017. 4. 28(4일간)
- 대상기간 : 2015. 4. 21 ~ 2017. 4. 24(2개년)
- 감사자 : 기획감사실장 외 6인

### 3. 감사중점사항

- 공사·구매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의 적정성
- 기획, 총무행정, 문화 관광 등 일반행정 추진사항
- 농정업무, 지역경제업무 및 산불예방 대책 추진사항
- 복지행정 추진실태 및 관리의 적정성
- 소규모사업 및 각종 공사 시공의 적정성 여부
- 생활민원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확인
- 각종 세금 과세자료 누락여부 확인 등

#### 4. 주요위반사항 요약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기획·민원 일반행정	민방위대 자원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6년도 민방위대 편성결과 제출 공문에 의거 민방위대를 편성한후 리 민방위 대장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를 통지하지 않음  <a href="#">【민방위기본법 제20조 7항】</a> </li> </ul>
	비밀문서 및 전산 보안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급 비밀전용 USB 1건, III급 비밀전용 USB 1건, 대외비카드 1건에 대하여 관리번호(I 급 : 1, III급 : 94, 대외비 : 106)를 부여하지 않고 일반 봉투에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보안진단서에 의거하여 기록유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a href="#">【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40조, 총무과-1189( *17.01.16)호】</a> </li> </ul>
세출분야	이장 위·해촉에 따른 기본수당 지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7.04.03 구학1리 김춘호 이장의 사망으로 인해 2017.04.10 신임 김영운 이장을 위촉하면서 신규 위촉된 이장 김영운에 대해 기본수당 200,000원을 일괄 지급하여, 해촉된 이장김춘호에 대한 기본수당 20,000원을 과소 지급, 신규 위촉된 이장 김영운에 대해서는 기본수당 60,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a href="#">【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a> </li> </ul>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세출분야	유류카드 이용대금 계좌입금 조치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재일까지 해당 결재계좌로 입금 조치 하여야 함에도 행정차량 및 청소차량에 대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유류비를 2015년 13건(1일~13일 자연), 2016년 3건(22일 자연), 2017년 2건(4일 자연)을 늦게 결재 계좌에 입금하는 등 지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b>【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9호 2015. 01.22)정자치부 훈령】</b></li> </ul>
	신용카드 발급대장 작성 비치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 공무원은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고 비밀 번호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2017. 4월 감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 2개, 유류구매카드 2개에 대해 신용카드 발급 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아 신용카드별 발급일자, 갱신내역 등의 정보를 알수 없도록 관리하는 등 신용카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b>【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b></li> </ul>
	주민등록법 및 가족 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122조(과태료),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제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의거 김생석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위반(직권거주불명등록)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8,000원을 과소부과하였으며, 박민주 출생 외 3건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자진납부 20% 경감으로 부과하여야 하나 감경하지 않아 총 4건 80,000원을 초과부과한 사실이 있음.  <b>【주민등록법 제40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b></li> </ul>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세무분야	주민세(법인균등분) 과세자료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암군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읍면에서는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기초 과세자료 조사에 철저를 기하지 않음으로 주민세(법인균등분) 5건 275,000원이 누락되어 과세대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음.  <a href="#">【재무과-18451(2015.7.23)호, 재무과-18064(2016.7.25)】</a> </li> </ul>
	재산세 (건축물) 과세자료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산세(건축물) 부과 관련 임시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실상 현황을 파악 과세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현장사무실로 사용중인 1년을 초과한 가설 건축물 도포면 원항리 1325번지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 등 3건에 대하여 과세자료 미제출로 재산세(건축물) 516,040원이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음.  <a href="#">【재무과-13821(2015.6.5.)호, 재무과-13489(2016.6.10)】</a> </li> </ul>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암군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읍면에서는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미신고 납부한 1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여 주민세(재산분) 2건 252,500원이 누락되어 과세대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음.  <a href="#">【재무과-17483(2015.7.13.)호, 재무과-17115(2016.7.14.)】</a> </li> </ul>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사회복지 분야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연간계획 미수립 및 이행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초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1회이상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근로능력이 있는자는 분기별 1회 방문상담을 통해 자활지원을 위한 욕구조사 및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상담일지를 작성 하고, 소득과 생활실태변동자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등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하나 2015~2016년에는 대상자 194세대중 135세대만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등 대상자 관리에 업무을 소홀히 하였음.</li> </ul> <p style="color: blue;">【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1항(확인조사),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연간조사계획의 수립)】</p>
	노인 이·미용권 지원 대상자 홍보 및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하는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꽤적한 노후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중인 사업으로 2015~2016년에는 만 65세 기초 연금수급대상자, 2017년에는 만65세이상 전노인에 대하여 분기별로 대상을 파악 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2015~2016년에는 신규대상자 및 관외전입자에게도 변동일 다음달부터 지원하여야 함에도 35명에게 130매를 미지원하는등 복지홍보 및 대상자 복지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li> </ul> <p style="color: blue;">【영암군 노인목욕권 및 아·미용비 지원조례】</p>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농업분야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검토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접수처리시 발급 심사 요령에 농업계획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자와 농업법인에 한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주말·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은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도 2015년 5건, 2016년 5건, 2017년 3건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접수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영농 계획서를 첨부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li> </ul> <p>【농지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7조 2항 1호(축산식품부령)】</p>
	귀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사후관리 실태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부터 2017년 4월 현재까지 귀농인정착 금지원 대상자 총 7명에 대하여 매년 반기별 1회이상 실거주, 거주인원, 영농기반, 농업 종사여부, 애로사항 청취 등 실태조사를 실시 귀농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함에도 2016년부터 2017년 4월 현재까지 최광철 등 4명에 대하여는 관리 대장 미작성 등 관리카드 기록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li> </ul> <p>【영암군 귀농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친환경농업과-1656(2015.2.3.)호, 친환경농업과-583(2016.1.13.)호, 친환경농업과-869(2017.1.16.)호】</p>
	2015년도상반기 가축 통계조사 업무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통계조사는 농가별로 전수조사하여 축산 행정 및 가축행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 임에도 2015년 상반기 가축통계조사시 이장 및 마을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조사내용, 조사자 날인등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가축통계 조사를 실시하여 군에 보고하는 등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li> </ul> <p>【산림축산과-12767(2015.5.14.)】</p>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건설도시 분야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사전승인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동마을 농로포장공사 외 6개소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승인 없이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 1인을 2개 현장 이상에 중복 배치하는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li> </ul>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p>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준공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포면 구학리 농로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본 설계내역에 코아채취 1개소를 반영 하였으나 미 시공한 채로 준공처리 되었으며, 공사감독은 준공 전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계약금액대로 집행하여 제작비를 포함한 총 금액 82,000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li> </ul> <p>【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2항】</p>
	건설폐기물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포면에서는 함반동 앞 암거설치공사와 3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 지구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콘 및 아스콘) 49.9톤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및 처리확인을 하지 않은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한 사실이 있음.</li> </ul>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p>